제22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(2016.12.9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·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 **심 사 보 고 서** _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6. 11. 23.

나. 발 의 자: 김종두·표주숙·박희순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 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개정이유

○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 구체화(안 제16조)
 -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(매 회계연도 300만원)초과 금품 수수 금지
 - O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
 -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직계 존·비속의 금품 수수 금지
 - O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 열거

- 나.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 구체화(안 제18조)
 - O 강의 등의 대가로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
 - O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및 반납 조치
 - O 월 3회 이상 외부 강의시 의장의 사전 승인 필요
- 다.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사항 강화(안 제22조 및 제25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O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-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-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⁻ 심 사 보 고 서 ⁻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6. 11. 24.

나. 발 의 자: 김종두·표주숙·박희순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 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개정이유

○ 2017년도 월정수당을 「지방자치법」및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"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"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에서 3.0%를 인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O 월정수당 금액 변경(안 제6조 제2항)
 - 1,653,830원 ⇒ 1,703,440원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및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"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" 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액(월정수당 3.0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O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